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504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송도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인제,

김지향, 김춘곤, 남창진, 박영한, 박칠성, 봉양순, 성흠제, 아이수루, 왕정순 , 유정희, 이상욱, 이영실, 이원형, 임규호, 임만균, 최민규, 한 신 의원(20 명)

1. 제안이유

○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기존의 '청와대소방대'의 명칭이 '대통령경호 처소방대'로 변경되어 소방관서장의 대상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, 소 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의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'서울시민안 전체험관'이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 개정(2022.11.30.시행)으로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편제 · 신설됨에 따라 소방관서장에 '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'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소방관서장의 범위 중 청와대소방대장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을 추가함(안 제3조제2항제3 호~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소방공무원법」,「소방기본법」,「서울특별시 행정기 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의 "청와대소방대장"을 "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4.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장례식)	제3조(장례식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	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
음 각 호와 같다.	음 각 호와 같다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청와대소방대장	3.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
<u><신 설></u>	4.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